

【 창원시아구소프트볼협회 창원일요리그 정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창원시아구소프트볼협회 창원일요리그(이하 창원일요리그)에 가입한 팀 간의 경기 등 리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취지) 창원일요리그 회원들의 건강한 신체 및 건전한 사고를 함양하고 회원 상호간에 친목 도모 및 지역야구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제3조 (명칭및마크) 창원일요리그의 명칭은 “창원시아구소프트볼협회 창원일요리그”라고 정하고 심벌마크는 대회를 기준으로 한다.

제4조 (자격) 창원일요리그에 가입할 수 있는 팀은 다음 사항에 준한다.

1. 창원시 소재지를 둔 직장 또는 동호인팀은 누구나 참가 할 수 있다.
2. 팀 구성은 규정에 의해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인원 구성이어야 한다.
복장은 통일된 복장이어야 한다.
3. 팀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가입을 원하는 팀은 가입서(리그양식) 및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며 리그의 가입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5. 각 팀은 회원들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경제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창원일요리그에 등록된 회원은 의무적으로 창원일요리그 회원의 상해에 대한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은 경기를 할 수 없다.

부칙 창원일요리그 회원의 상해에 대한 공제 규정 참조

제5조 (회의) 본 창원일요리그의 회의는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1. 운영부 대표회의
2. 창원일요리그 대표자회의
3. 정기총회(매년 12월중으로 개최한다. 단, 창원일요리그 사정으로 변경 될 수 있다.)
4. 긴급회의, 임시총회(긴급한 사안을 요할시 또는 각 대표자의 1/3이상 소집을 요구할 시 운영부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및 징계)창원일요리그에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선출하고 조직을 운영한다.

1. 운영부의 구성
 - 가. 고문은 운영부에서 추대하고 정기총회 및 대표자 회의에서 승인을 득한다.
단,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 된다.
 - 나. 고문, 회장, 부회장(약간명) 사무국장, 사무차장, 경기이사, 운영이사, 관리이사, 심판이사로 구성한다.
 - 다. 감사 2명
 - 라. 창원일요리그 대표자 : 각 팀의 대표(감독,회장,총무)1명
2. 운영부(임원) 선출 방법

- 가. 고문은 운영부에서 추대하고 정기총회 및 대표자 회의에서 승인을 득한다. 단, 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 된다.
- 나. 회장은 창원일요리그 임원으로 2년 이상 봉사한 자로써 출마의사는 본인 또는 임원진의 추대로 가능하며 단독 출마시 임원진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회장후보로 출마가 가능하고, 리그회장 선출 후 창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담당 이사 및 협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임명된다.
- 다. 부회장, 사무국장, 경기이사, 운영이사, 관리이사, 심판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라. 감사선임은 정기(결산)총회에 참석한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최다득표자 2명을 선출한다.
- 마. 임기
운영부의 구성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3. 의결기관

가. 정기총회

- 가-1 사업결산보고(결산) 및 신규사업 심의 결정
- 가-2 리그운영규정 제개정
- 가-3 신규가입팀의 승인
- 가-4 감사 선출 및 운영부 구성
- 가-5 운영부 탄핵 및 징계

나. 임시총회(긴급총회) - 정기총회와 동일

다. 창원일요리그 대표자 회의

- 다-1 신규 가입팀 승인
- 다-2 리그 운영 제반업무 변경 및 신규 사업 승인
- 다-3 리그 운영에 관한 사항
- 다-4 상벌에 관한 건
- 다-5 정기총회 위임건 및 기타 사항

라. 상벌 위원회 (6조5항에 의거 한다.)

상벌 위원회는 부회장이 위원장으로 운영이사, 감사, 심판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하고 해당팀 대표자(선수) 참석 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고 의결한다.

4. 의결

- 가.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운영부의 탄핵은 2/3참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나. 의결방법은 거수 또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5. 임원의 임무

- 가. 고문 : 창원일요리그 발전에 앞장선다.
- 나. 회장 : 창원일요리그 운영을 총괄하고 창원일요리그를 대표한다.
- 다. 부회장
 - 가-1.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 가-2. 창원일요리그 대외적인 홍보에 책임을 진다.
 - 가-3. 부회장은 징계, 상벌위원장을 맡는다.
- 라. 사무국장 : 창원일요리그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책임 관리 및 제반업무를 시행하며 회계담당을 하고 회장에 보고한다.
- 마. 운영이사 : 리그를 운영하며 경기 진행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 바. 경기이사 : 리그경기일정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
- 사. 관리이사 : 경기장 및 시설, 비품을 관리한다.
- 아. 심판이사 : 경기에 심판을 배정하고 교육을 한다.
- 자. 사무차장 :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 차. 대표자 : 창원일요리그 발전에 협조 등 적극 동참한다.
- 6. 징계 : 창원일요리그에 명예를 실추하고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팀은 아래와 같이 징계를 가한다.
 - 가. 심판의 판정에 불복종하고 경기를 중단하여 10분내 경기를 진행하지 않은 팀은 몰수패로 처리한다.
 - 나. 가항에 해당하는 몰수패가 1회인 팀은 벌금 20만원, 2회인 팀은 벌금 40만원으로 한다.
 - 다. 경기도중 상대편 및 심판 운영위원등에게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한 선수는 퇴장 조치한다.
 - 라. 음주 경기를 하는 선수는 3게임 출장 정지를 시킨다.
 - 마. 몰수패를 합한 3패팀은 익년대회 참가를 하지 못한다.
 - 단, 참가를 원할 경우 특별회비(신규팀가입금액)를 납부 후 참가 할 수 있다. 특별회비에 의해 가입된 팀이 몰수, 기권패 합산 5패를 하면 익년대회는 참가 할 수 없다.
 - 바. 기권패라 함은 경기 7일전에 반드시 상대팀에게 연락 후 홈페이지, 사무국으로 통보 하였을 경우에 해당 한다.
 - (기권패 팀은 상대 팀에 벌금 10만원을 지급한다.)
 - 사. 경기당일 선수 부족 등으로 몰수패시 벌금 20만원으로 하고 10일 이내 납부한다. (몰수승팀 10만원 지급)
 - 아. 운영부 및 창원일요리그 대표자회의,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무조건 이의제기 할 수 없다.
 - 자. 위의 사항 중 운영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기에 대하여 제6조 2항 라에 의거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7. 징계의 종류 (상벌위원회)

- 기타 상식 밖의 행동으로 창원일요리그 명예를 실추한 팀 및 선수는 징계 및 벌금을 가한다.

가. 3경기 출장 정지 벌금 5만원

나. 5경기 출장 정지 벌금 10만원

다. 잔여경기 출전 금지 벌금 10만원

라. 리그 퇴출 (제명)

마. 기타

제2장 창원일요리그 운영

제7조 창원일요리그의 정의

1. 정규리그는 5개부로 운영한다. (1부,2부A,2부B,3부A,3부B) 단, 변경 될 수 있다.
2. 각 부는 14개 팀을 최대로 제한 한다.
3. 정규리그 대회 일정은 운영부가 결정한다.

경기일정은 개막 15일전에 결정하여 각 팀에 통보한다. 창원일요리그 개막 후 경기 일정 조정은 상대팀과 협의 후 각 팀당 1회에 한하여 변경 할 수 있다.(단,7일전)

제8조 모든 경기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수등록

가. 선수등록은 개막전 홈페이지 등록선수 기준으로 한다.

나. 리그 진행 중 비선수 출신은 경기전 홈페이지 등록 후 경기출전이 가능하다.

다. 리그 진행 중 선수 출신은 2경기 이상 지난 후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라. 리그 진행 중 신규 선수 등록은 8월 말까지로 제한 한다.

마. 다른 팀으로 이적을 요구 할 시 해당 팀 감독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바. 고등학교 재학생은 출전 불가한다.

사. 한팀에서 2개팀을 만들경우 3명까지 중복으로 등록 및 출전 할 수 있다.

단, 선출은 제외(초,중 포함) 중복 등록된 선수는 하위 부에서 입상 시 시상하지 않으며 반드시 리그개막 전 등록으로 원칙으로 한다. 리그 진행 중 등록은 불가한다. 같은 부에서 중복등록 불가.

(타리그 출전을 위한 등록은 인정)

2. 심판운영: 정규리그 심판은 2심제로 운영하며 1경기당 주심5만 루심4만5천 기록원 3만5천원(경기결과 등재포함)을 지급한다.

가. 조직: 심판이사 1명, 심판차장1명, 및 심판원(운영부 겸직 할 수 있다.)

나. 자격: 신규 심판은 KBO공인 심판교육 이수자 중에 운영부에서 결정 한다.

다. 교육: 심판장은 심판을 소집 및 교육 후 경기에 투입 한다.

라. 권한: 게임에서 일어난 사항은 그 게임의 주심에게 권한을 부여 하며 이의 신청시 운영이사, 심판이사과 협의 후 해당팀에게 통보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다. 경기 종료 후 서면 또는 구두로 운영부에게 전달 한다.

마. 그 외 기타 규정은 창원일요리그 심판위원 별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 리그의 순위 결정 및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창원일요리그 우승팀(1부,2A부,2B부.3A부,3B부)에게는 우승트로피 시상 및 9조4항 가.나 “개인시상” 한다.

(제9조 1항 순위결정 적용)

1.순위결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가. 승점제 원칙 (승점기준: 승리시3점, 무승부1점, 패0점)

나. 승자승 원칙(2팀 동률시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항에 의한다.)

다. 승점이 서로 일치 할 경우 아래 사항의 우선순위로 순위를 결정한다.

1. 기권 및 몰수패가 없어야 한다.

2. 리그 운영규정에 의거 팀 벌금이 없어야 한다.(선수포함)

3. 해당 팀간의 실점 합계가 최소로 한다.

4. 해당 팀간의 득점 합계가 최대로 한다.

5. 동전 던지기

2. 정규리그 시상

가. 우승 : 우승기, 트로피, 상금

나. 준우승 : 트로피, 상금

다. 3위 : 트로피, 상금

3. 토너먼트 시상

가. 우승 : 트로피, 상금

나. 준우승 : 트로피, 상금

다. 공동3위 : 부상

4. 개인시상

가. 정규리그 시상 : 타격상, 감독상, 흥런상, 다승왕(1부,2A부,2B부,3A부,3B부)
시상하고 트로피 및 부상

선수출신 : 흥런상 1명, 타격상(1.2.3위)- 1부,2A부,2B부.3A부,3B부
시상하고 1위는 트로피 및 부상, 2,3위는 부상

비선수출신: 흥런상 1명, 타격상(1.2.3위)- 1부,2A부,2B부3A부,3B부
시상하고 1위는 트로피 및 부상, 2,3위는 부상

[흥런상: 1. 흥런수가 2개 이상 2. 총타점합계 3. 최소타석 4. 연장자 우선]

[다승왕 : 승수가 동수 일 경우 1. 최다이닝 2. 연장자 우선]

나. 토너먼트 시상 : 최우수선수상, 우수선수상 : 트로피, 부상

5. 승강제

가. 리그 최종 성적에 따라 각부 상위3팀이 상위리그로 하위3팀이 하위리그로의

승강제를 실시 운영한다.

나. 신규가입팀은 3부B로 가입한다. 단, 타리그 이적 팀은 운영부에서 판단하여 편성한다.

제3장 회계

제10조 : 창원일요리그의 제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각 팀의 회비 : 참가비는 220만원으로 한다.[심판비,시합구 포함]
2. 찬조금 및 스폰, 보조금, 벌금
3. 신규 가입팀의 가입비는 30만원으로 한다.
4. 벌금은 1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출전 하지 못한다.

[별도 규정]

1. 벌금은 제1장 제6조 5항 및 6항 규정에 의거 해당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리그에 입금된 각 팀의 참가비 및 기타 금액은 반환을 요구 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3. 특별회비
리그에 등록한 선수 중 사망이나 중대한 재해를 당하였을시, 특별회비를 거출할 수 있다. 창원일요리그 회원의 대한 상해 공제에 가입된 자에 한하며 제4조5항에 의한다.

제11조 경기 규칙 및 규정

1. 경기의 선공은 홈, 원정팀으로 결정한다.
2. 출전 선수 명단은 경기 시작 20분전에 본부석에 제출하며, 양팀은 경기 시작 직전 상호 교환하며 복장은 통일 되어야 한다.
티-셔츠착용 시 가로, 세로15cm 이상의 등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 색상 등 약간의 오차는 경기 전 운영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3. 경기시작[팀라인업] 후 10분후 까지 출전 하지 않을 시 몰수패로 규정 한다.
4.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10분 경과시 까지 출전하지 않을시 몰수패로 규정한다.
5. 심판은 2심제로 운영한다.
6. 포수는 필히 포수용 장비를 착용 하여야 한다.
7. 경기 중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반드시 감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8. 경기의 취소는 경기 7일전에 반드시 사무국에 연락 후 기권패로 처리하며, 사전 연락 없이 일방적인 취소는 몰수패로 처리한다. 몰수패는 제6조 5항 바,사에 준하여 처리 한다.
9. 우천시 연기된 경기는 추가 편성으로 진행 한다.
10. 경기 제한시간은 2시간, 이닝제한 7이닝이며, 동점시 무승부로 처리하고, 경기시간 15분 미만이 남았을시 새로운 이닝에 돌입 할 수 없다.
11. 강우 콜드게임은 1시간 초과시 적용하며, 콜드게임은 4회10점, 5,6회7점으로

인정한다.(시간우선)

12. 선수 출신자 기용은 1부 3명, 2A,2B부 2명, 3A3B부 1명으로 하며 투구는 1부 연속20이닝, 2A,2B부는 1회2회 투구, 3A,3B부는 투구불가(포수가능)로 제한한다.
13. 선수 출신은 **만40세(1984년생)**이상 선수 출신자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4. 부정 선수를 출전시켜 경기를 마친 후 7일전까지 운영부에 상대팀에서 의의 신청이 있을시 부정선수로 판정 되면 해당 경기는 몰수패로 처리 한다.
15. 선수출신의 구분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시도협회 주최, 주관대회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수출로 인정, 경기출전 한 사실이 있을시 선수로 인정한다.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시 선출로 인정한다.
16. 선수 출신자는 창원일요리그 등록 및 경기시 출신자라고 표시 등록 한다.
17. 대회공인구는 창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 창원일요리그 공인구로 하며 운영부에서 제공한다.
18. 창원일요리그에 등록한 선수의 사망시 팀당 5만원씩 각출하여 지급한다.
19. 승리팀에서 구장 정비 및 관리를 한다.
20. 비디오판독은 각 팀 감독만이 판정을 내린 심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판판정 후 30초 내에 구두로 신청해야한다. 기회는 1회로 하며 판정이 번복된 경우 1번의 기회를 더 줄 수 있다.
21. 불법 개조 및 카본소재 배트는 사용을 금지한다.(발각시 해당선수 아웃처리 후 경기 진행)

[부칙] 창원일요리그 회원의 상해에 대한 공제 운영 규정

창원일요리그 규정 제4조 6항 “창원일요리그에 등록된 회원은 의무적 보험가입” 규정에 의거 리그 자체적으로 공제 기금을 운영한다.

1. 적용대상 : 창원일요리그에 등록된 회원.
2. 적용범위 : 창원일요리그 경기 중 발생한 회원의 상해로 제한한다.
단, 창원일요리그에서 접수 받아 참가한 기타 단체가 주관하는 경기에 참가시 동일하게 적용 한다.
3. 지급범위 : 상해 발생시 의료 보험 처리 후 개인 부담금 최대 50만원 지원 한다.
창원일요리그 경기 중 발생한 회원의 상해로 CT.MRI 촬영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4. 창원일요리그 경기 중 차량 및 기물 파손에 대하여는 최대 50만원 까지 지원 한다. 88야구장 밖 사고에 대한 대인/대물 사고는 시설물배상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5. 기금조성 : 창원일요리그에 등록된(리그 중 신규포함) 회원당 5천원씩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단, 회계기간 부족 할 경우 정기 총회에서

팀 당 추가로 부담 한다.

6. 기금운영 : 공제기금은 상기 내용으로만 사용 가능하고 타용도로 절대 사용 할 수 없으며 매년 잉여금은 이월 한다.
7. 운영위원 : 운영부, 감사

2023년도 12월27일 개정 시행한다.